

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1999. 8.

제출자 : 이천시장

제안이유

-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추진지침에 따라 2000년 7월 31일까지 감축되는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

주요골자

- 가. 이천시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중 집행기관의 정원 755명중 61명을 감원하여 694명으로 조정함(안 제2조).

이천시조례 제 호

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

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증 “755”를 “694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①(정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 31일까지는 다음 「표」를 적용한다.

[표]

1999년도 정원표

구 분	정 원
1. 집행기관의 정원	733
2. 의회사무국의 정원	16

②부칙 제2조제1항 「표」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2인(집행기관의 정원 22인)에 해당하는 초파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, 제2조의 시행으로 인해 감축되는 정원 39인(집행기관의 정원 39인)에 해당하는 초파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7월 31일까지 그 초파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 (정원의 총수)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집행기관의 정원 : 755명 2. 의회사무국의 정원 : 16명</p>	<p>제2조 (정원의 총수) -----</p> <p>-----</p> <p>1. 집행기관의 정원 : 694명 2. -----</p>